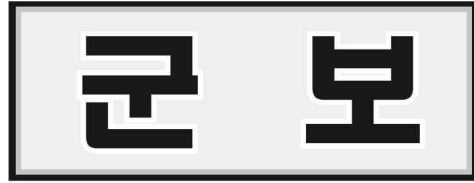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21호 2026. 3. 30.

규 칙

- 순창군 규칙 제1327호 순창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1
- 순창군 규칙 제1328호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11

훈 령

- 순창군 훈령 제663호 순창군 정원관리기관별의 정원배정규정 일부개정규정 13
- 순창군 훈령 제664호 순창군 팀장명칭 및 직급규정 일부개정규정 17

예 규

- 순창군 예규 제34호 순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지침 일부개정 22

고 시

- 순창군 고시 제2026-66호 적성면 석산지구 개간사업 준공 고시 24
- 순창군 고시 제2026-67호 쌍치면 금성지구 개간사업 준공 고시 25
- 순창군 고시 제2026-76호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26
- 순창군 고시 제2026-78호 유등면 책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27
- 순창군 고시 제2026-80호 순창 군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9
- 순창군 고시 제2026-82호 2026년 상수도 정액제 급수공사비 고시 31
- 순창군 고시 제2026-85호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36

회 람									
--------	--	--	--	--	--	--	--	--	--

발 행 : 순창군 (편집 기획예산실)

제2회 순창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순창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순창군수

순창군 규칙 제1327호

순창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 체계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도움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지원 내용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상급기관으로부터 징계의결 등이 요구가 된 경우에 한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순창군 소송사무 처리 규정」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고소·고발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민사상 책임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순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 절차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감사부서 장(이하 “감사부서 장”이라 한다)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부서 장 등으로부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 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정)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 취소 및 반환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등의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직급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담당업무	성명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순창군수 귀하							

제2회 순창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규칙 제1328호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1]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 과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 과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644	306	18	141	28	151	총계			644	306	18	141	28	151
일반직계			<u>596</u>	299	18	<u>102</u>	27	<u>150</u>	일반직계			<u>596</u>	299	18	<u>102</u>	27	<u>150</u>
5급 소계			<u>32</u>	14	3	<u>3</u>	1	<u>11</u>	5급 소계			<u>32</u>	14	3	<u>3</u>	1	<u>11</u>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u>2</u>			<u>2</u>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u>2</u>			<u>1</u>		<u>1</u>
행정,농업,시설,녹지			<u>2</u>					<u>2</u>	행정,농업,시설,녹지			<u>2</u>			<u>1</u>		<u>1</u>
6급 소계			<u>146</u>	<u>73</u>	2	<u>20</u>	11	<u>40</u>	6급 소계			<u>146</u>	<u>73</u>	2	<u>20</u>	11	<u>40</u>
행정,농업			<u>4</u>	2		<u>2</u>			행정,농업			<u>4</u>	2		<u>1</u>		<u>1</u>
행정,사회복지,보건			<u>8</u>	<u>4</u>				<u>4</u>	행정,사회복지,보건			<u>8</u>	<u>3</u>				<u>5</u>
행정,농업,공업			<u>5</u>	2		<u>1</u>		<u>2</u>	행정,농업,공업			<u>5</u>	2		<u>2</u>		<u>1</u>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u>6</u>	<u>1</u>		4		<u>1</u>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u>6</u>	<u>2</u>		4		
7급 소계			<u>167</u>	89	<u>9</u>	26	<u>7</u>	36	7급 소계			<u>167</u>	89	<u>10</u>	26	<u>6</u>	36
행정			<u>34</u>	18	<u>6</u>		<u>2</u>	8	행정			<u>34</u>	18	<u>7</u>		<u>1</u>	8
8급 소계			<u>163</u>	83	<u>4</u>	33	<u>7</u>	<u>36</u>	8급 소계			<u>163</u>	83	<u>3</u>	33	<u>7</u>	<u>37</u>
행정			<u>26</u>	15	<u>2</u>		2	<u>7</u>	행정			<u>26</u>	15	<u>1</u>		2	<u>8</u>
행정,시설			<u>12</u>	10		1	<u>1</u>		행정,시설			<u>12</u>	10		1		<u>1</u>
사무운영			<u>2</u>					<u>2</u>	사무운영			<u>2</u>				<u>1</u>	<u>1</u>
9급 소계			<u>79</u>	36		15	<u>1</u>	<u>27</u>	9급 소계			<u>79</u>	36		15	<u>2</u>	<u>26</u>
행정,녹지			<u>2</u>	1				<u>1</u>	행정,녹지			<u>2</u>	1			<u>1</u>	

순창군 정원관리기관별의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3월 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훈령 제663호

순창군 정원관리기관별의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순창군 정원관리기관별의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순창군 팀장명칭 및 직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3월 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훈령 제664호

순창군 팀장명칭 및 직급규정 일부개정규정

제6조(주민복지과) ② 희망복지팀장·통합보장팀장·드림청소년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로, 여성가족친화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전산주사로, 아동복지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로, 장애인복지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행보건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간호주사로 한다.

제9조(재무과) ② 세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경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지방전산주사로, 징수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로, 재산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공업주사로, 세입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로 한다.

제10조(문화관광과) ② 문화예술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지방전산주사로, 관광마케팅팀장은 문화관광시설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관광자원개발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문화관광시설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학예연구사로, 도서관운영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문화유산팀장은 지방학예연구사로 한다.

제16조(산림공원과) ② 산림경영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

방목지주사로, 산림보호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공업주사로, 산촌소득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지방시설주사로, 공원관리팀장·자연휴양림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지방시설주사로 한다.

제21조(농업축산과) ① 농정팀장·축산방역팀장은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행정주사로, 농산물유통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원예특작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공업주사로, 축산경영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수의주사로 한다.

제22조(친환경농업과) ② 친환경농업팀장·기술보급팀장 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행정주사로, 과학영농팀장은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지방농업주사로, 유기농자재팀장은 농업연구사로 한다.

제23조(농업기술과) ② 지도육성팀장·작물기술팀장·농촌자원팀장은 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농업교육팀장은 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행정주사로, 소득경영팀장은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지방농업주사로, 농기계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공업주사로 한다

제24조(장류산업사업소) ② 장류특구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환경주사로, 미생물산업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식품위생주사로, 장류산업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지방식품위생주사·지방보건연구사로, 연구검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식품위생주사·지방보건연구사로 한다.

제27조(면) ⑤ 민원팀장은 동계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녹지주사로, 복흥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로, 쌍치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녹지주사로, 구림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한다.

⑥ 산업팀장은 인계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동계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환경주사·지방공업주사로, 적성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로, 유등면은 지방기계운영주사 또는

사무운영주사로, 풍산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환경주사로, 금과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지방농업주사로, 팔덕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녹지주사로, 복흥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환경주사로, 쌍치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환경주사·지방공업주사로, 구림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 (주민복지과) ① (생략)</p> <p>② 희망복지팀장·통합보장팀장·드림청소년팀장·장애인복지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로, (생략)</p>	<p>제6조 (주민복지과) ① (생략)</p> <p>② 희망복지팀장·통합보장팀장·드림청소년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로, (현행과 같음), <u>장애인복지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행보건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간호주사로</u> 한다.</p>
<p>제9조(재무과) ① (생략)</p> <p>② (생략), 징수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생략)</p>	<p>제9조(재무과) ①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 <u>징수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로,</u> (현행과 같음)</p>
<p>제10조(문화관광과) ① (생략)</p> <p>② 문화예술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로, 관광마케팅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지방전산주사로, (중략), 도서관운영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생략)</p>	<p>제10조(문화관광과) ① (생략)</p> <p>② <u>문화예술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지방전산주사로, 관광마케팅팀장은 문화관광시설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u> (중략), <u>도서관운영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u> (현행과 같음)</p>
<p>제16조(산림공원과) ① (생략)</p> <p>②산림경영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공업주사로, 산림보호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녹지주사로, (생략)</p>	<p>제16조(산림공원과) ① (생략)</p> <p>②<u>산림경영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녹지주사로, 산림보호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공업주사로,</u> (현행과 같음)</p>
<p>제21조(농업축산과) ① (생략)</p> <p>② (생략) 농산물유통팀장·원예특작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생략)</p>	<p>제21조(농업축산과) ①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 <u>농산물유통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원예특작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공업주사로,</u> (현행과 같음)</p>
<p>제22조(친환경농업과) ① (생략)</p> <p>② 친환경농업팀장·기술보급팀장·유기농자재팀장은 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행정주사로, (생략)</p>	<p>제22조(친환경농업과) ① (생략)</p> <p>② 친환경농업팀장·기술보급팀장 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행정주사로, (현행과 같음) <u>유기농자재팀장은 농업연구사로</u> 한다.</p>
<p>제23조(농업기술과) ① (생략)</p> <p>② 지도육성팀장·농업교육팀장·작물기술팀장·소</p>	

현행	개정안
<p>특경영팀장·농촌자원팀장은 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생략)</p> <p>제24조(장류산업사업소) ① (생략)</p> <p>② 장류특구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식품위생주사로, 미생물산업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환경주사로, 장류산업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생략)</p> <p>제27조(면) ①,②,③,④ (생략)</p> <p>⑤ 민원팀장은 (생략) 복흥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간호주사로,(생략)</p> <p>⑥ 산업팀장은 인계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공업주사로, (생략)</p>	<p>제23조(농업기술과) ① (생략)</p> <p>② 지도육성팀장·작물기술팀장·농촌자원팀장은 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u>농업교육팀장은 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행정주사로, 소득경영팀장은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지방농업주사로,</u> (현행과 같음)</p> <p>제24조(장류산업사업소) ① (생략)</p> <p>② <u>장류특구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환경주사로, 미생물산업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식품위생주사로, 장류산업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지방식품위생주사·지방보건연구사로,</u> (현행과 같음)</p> <p>제27조(면) ①,②,③,④ (생략)</p> <p>③ 민원팀장은 (생략) <u>복흥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로,</u> (현행과 같음)</p> <p>⑥ 산업팀장은 <u>인계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u> (현행과 같음)</p>

순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지침 지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3월 30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예규 제34호

순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지침 일부개정

순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회단체” 를 “순창군 공익 목적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사회단체” 로, “50m” 를 “500m”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10일” 을 “7일” 로, “15일” 을 “10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타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게시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조(현수막의 게시) ①·② (생 략)</p> <p>③ <u>사회단체</u>에서 게시하는 행사 홍보용 현수막은 제1항에도 불 구하고 행사 15일 전부터 읍· 면사무소로부터 반경 <u>50m</u> 이내 에 게시할 수 있다.</p> <p>④·⑤ (생 략)</p> <p>⑥ 지정게시대 및 지정장소 게 시기간은 순창읍 지정게시대는 <u>10일</u>, 읍면 지정게시대는 <u>15일</u>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정 게시대의 게시공간의 여유가 있 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연장신청 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연장 하여 게시 할 수 있다.</p>	<p>제4조(현수막의 게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순창군 공익 목적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사회단체</u>----- ----- ----- <u>50m</u>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7일</u>----- <u>10일</u>- -----.</p>

순창군 고시 제2026-66호

적성면 석산지구 개간사업 준공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순 창 군 수

1. 사업의 목적	개간사업(밭작물 재배)	
2. 사업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산214번지(255-1)	
3. 사업시행자	성 명	이 * *
	주 소	순창군 적성면 00길 0000
4. 지적/시행면적	4,990㎡ / 4,990㎡	
5. 사업소요비용	3,900,000원	
6. 사업기간	2025. 8. 1. ~ 2026. 2. 25.	
7. 사업효과	농가소득 창출	
8. 이의신청	순창군청(경제산업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 ☎063-650-1836)	

순창군 고시 제2026-67호

쌍치면 금성지구 개간사업 준공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순창군수

1. 사업의 목적	개간사업(밭작물 재배)	
2. 사업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산3-1번지(255-1)	
3. 사업시행자	성명	장 * *
	주소	전남 나주시 0000길 0000
4. 지적/시행면적	4,380㎡ / 4,380㎡	
5. 사업소요비용	38,110,000원	
6. 사업기간	2025. 11. 18. ~ 2026. 3. 10.	
7. 사업효과	농가소득 창출	
8. 이의신청	순창군청(경제산업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 ☎063-650-1836)	

순창군 고시 제2026-76호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장덕지구, 평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순 창 군 수

- 1. 책임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 2.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 2개 지구(장덕지구, 평남지구)
- 3. 사업위치 및 면적

지구명	필지(필)	면적(m ²)	위 치	행정마을
계	709	172,661.8	2개 지구	
장덕지구	313	68,570.0	순창읍 장덕리 275번지 일원	장덕마을
평남지구	396	104,091.8	적성면 평남리 123번지, 적성면 괴정리 998번지 일원	평남,괴정마을

- 4. 위탁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 063-650-1416,1423,14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고시 제2026-78호

유등면 책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유등면 책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 내용을『농어촌정비법 제 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0일

순 창 군 수

1. 사 업 명 : 유등면 책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책암마을의 다양한 자원과 지역적 특색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발전 비전을 수립하여,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3.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유등면 책암마을 일원
4. 사 업 비 : 100백만원(군비 100)

5. 사업기간 : 2025~2026년(2년간)

6. 주요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회관 리모델링

7. 사업의 효과

- 책암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발전시켜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8. 사업시행자 : 순창군수

9.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농촌활력과(☎063-650-17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고시 제2026-80호

순창 군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순창군 고시 제2023-177호(2023. 12. 15.)로 결정(신설) 및 제2024-74호(2024. 6. 17.) 및 제2025-201호(2025. 11. 2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순창 군계획 시설(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작성된 내용을 실시 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30일

순 창 군 수

1.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관한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685-4번지 일원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 류 : 군계획시설(공공공지)

2) 명 칭 :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청순문화마당)

다. 사업의 면적(규모): 1,271.9㎡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1) 성 명 : 순창군수(농촌활력과)

2) 주 소 :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1) 실시계획인가일 ~ 2026. 6. 30.

바.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조서

참조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관련도면 및 세부조서 등 (변 경) : 게재 생략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건설과(063-650-1827)
농촌활력과(063-650-1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면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순창	남계	673-3	대	303.6	303.6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	-	-
2	순창	남계	673-4	대	301.2	301.2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	-	-
3	순창	남계	680-1	대	204.0	204.0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	-	-
4	순창	남계	673-5	도	30.8	30.8	조*현	전주시 다*동 3가 2*-1*	-	-	-	119분의 60
							황*연	남계리 6*3				119분의 59
5	순창	남계	673-6	도	4.1	4.1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	-	-
6	순창	남계	670-3	도	32.8	32.8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	-	-
7	순창	남계	685-4	도	73.0	73.0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	-	-
8	순창	남계	684-7	도	70.7	70.7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	-	-
9	순창	남계	968-8	대	60.2	60.2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	-	-
10	순창	남계	684	대	20.4	20.4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	-	-
11	순창	남계	685-5	대	3.0	3.0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	-	-
12	순창	남계	685-1	대	136.7	136.7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	-	-
13	순창	남계	685-6	도	6.2	6.2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	-	-
14	순창	남계	673-1 1	대	25.2	25.2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	-	-

순창군 고시 제2026 - 82호

2026년도 상수도 정액제 급수공사비 고시

순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상수도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3. 30.

순 창 군 수

1. 적용범위

- 가. 적용지역: 순창군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 나. 적용구경: 수도계량기 $\phi 13\text{mm} \sim \phi 50\text{mm}$
- 다. 적용거리: 급수관 연장 100m 이내(초과 시 실액제 적용)

2. 공사비 부담기준

- 가. 군 부담: 다수가 사용하는 상수도관(군 관리급수관)으로부터 5m이내 급수공사비
- 나. 신청인 부담
 - 1) 5m 초과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설비 및 계량기 설치비
 - 2) 계량기 보호통 설치 및 급수관로 5m 초과 거리의 공사비
- 다. 예외지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m 초과분(30m 이내) 공사비의 1/2지원
 - 2) 전염병 지정지역 등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 급수관부터 계량기까지 군비 부담 가능
 - 3)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에 따른 지방상수도 전환: 고시금액의 70% 범위 내 지원 가능

3. 공사비 산출방법

- 가. 공종별 단가산출(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운반비 포함)
- 나. 구경별 정액공사비는 별표 “2026년도 순창군 상수도 정액제 급수공사비 기준표” 에 따름

4. 시행일자

본 고시는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며, 다음 고시일까지 적용한다.

붙임 2026년도 순창군 상수도 정액제 급수공사비 기준표 1부.

[붙임]

2026년도 순창군 상수도 정액제 급수공사비 기준표

1. 급수시설비

(단위: 원)

구경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개소)	HI-VP계량기설치(개소)		PE계량기설치(개소)		측구(하수구, 담장) 횡단 (1m/개소)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	디지털	HI-VP	PE
13mm	24,000	207,790	220,890	282,420	295,520	398,980	322,840
20mm	37,000	264,640	278,470	336,480	350,310	406,300	323,170
25mm	61,000	278,070	291,900	352,630	366,460	419,790	329,420
32mm	85,000	288,380	302,210	385,330	399,160	439,420	247,660
40mm	123,000	383,080	383,080	488,300	488,300	455,390	349,100
50mm	247,000	420,360	420,360	543,380	543,380	499,450	351,500

구경	급수관부설(m)		지수전(개소)		비고
	HI-VP	PE	HI-VP	PE	
13mm	27,870	24,780	242,480	419,100	※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고시 내용에 따름.
20mm	28,900	25,380	246,550	433,280	
25mm	30,530	26,230	250,360	452,260	
32mm	32,910	27,550	264,360	506,810	
40mm	34,890	29,540	278,350	552,100	
50mm	28,860	32,220	287,260	619,350	

HI-VP 분기점분기, 부단수천공 분기 (단위: 개소)								
Φ 20	Φ 25		Φ 32			Φ 40		
Φ 16	Φ 20	Φ 25	Φ 16	Φ 20	Φ 25	Φ 16	Φ 20	
111,930	114,840	118,880	128,860	128,860	128,860	180,200	201,070	
Φ 50			Φ 75					
Φ 16	Φ 20	Φ 25	Φ 16	Φ 20	Φ 25	Φ 32	Φ 40	
181,480	202,340	243,960	209,100	229,960	276,030	304,400	403,720	
Φ 100					Φ 150			
Φ 16	Φ 20	Φ 25	Φ 32	Φ 40	Φ 50	Φ 16	Φ 20	Φ 25
220,540	241,410	287,600	314,960	432,670	497,680	230,330	253,230	297,010
Φ 150			Φ 200					
Φ 32	Φ 40	Φ 50	Φ 16	Φ 20	Φ 25	Φ 32	Φ 40	Φ 50
325,380	454,880	517,340	246,610	283,880	346,190	364,000	492,480	563,720

PE 분기점분기, 무단수천공 분기 (단위: 개소)								
Φ 20	Φ 25		Φ 32			Φ 40		
Φ 16	Φ 20	Φ 25	Φ 16	Φ 20	Φ 25	Φ 16	Φ 20	
123,160	130,410	132,210	130,410	132,210	133,870	271,940	292,640	
Φ 50			Φ 75					
Φ 16	Φ 20	Φ 25	Φ 16	Φ 20	Φ 25	Φ 32	Φ 40	
273,210	293,910	346,430	303,060	320,780	373,300	416,870	547,570	
Φ 100					Φ 150			
Φ 16	Φ 20	Φ 25	Φ 32	Φ 40	Φ 50	Φ 16	Φ 20	Φ 25
317,270	334,660	387,170	430,750	573,200	662,350	336,250	349,170	397,620
Φ 150			Φ 200					
Φ 32	Φ 40	Φ 50	Φ 16	Φ 20	Φ 25	Φ 32	Φ 40	Φ 50
445,260	603,060	692,220	379,670	400,370	457,420	501,000	678,310	766,570

※ 분기점분기(Φ 20~Φ 32), 무단수천공분기(Φ 40~Φ 200)

2. 포장깨기, 복구비, 중기운반

가. 포장절단 및 깨기

구 분	포장절단(m)	콘크리트 포장깨기(m)			아스콘포장깨기(m)	
		T=10cm	T=15cm	T=20cm	T=5cm	T=15cm
금액(원)	5,170	16,330	24,500	32,660	7,800	22,450

※ 폐기물처리비가 포함됨

나. 포장복구

구 분	콘크리트 포장복구(m)			아스콘덧씌우기(m)		아스콘 포장(m)	보도블럭 포장(m)
	T=10cm	T=15cm	T=20cm	As:5cm, con:15cm	As:5cm, con:20cm	As:15cm	소형고압블럭
금액(원)	11,710	14,730	17,750	27,620	31,180	30,910	8,720
구 분	투수콘첼저 및 복구(m) (콘크리트 포장깨기 포함)			탄성포장첼저 및 복구(m) (콘크리트 포장깨기 포함)			
	T=7cm, B=0.5m			con 10cm, 탄성포장 5cm			
금액(원)	31,850			100,090			

다. 중기운반

중기운반 거리(대당)									
5km	10km	15km	20km	25km	30km	35km	40km	45km	50km
168,250	222,800	274,440	325,950	380,760	432,450	484,650	550,280	590,660	662,740

3. 관급자재대

구분 구경	아날로그 수도계량기	디지털 수도계량기	비고
	수량계보호통+뚜껑+수도미터	수량계보호통+뚜껑+수도미터	
13mm	125,700	166,980	
20mm	178,930	221,150	
25mm	205,850	250,040	
32mm	272,430	308,950	
40mm	404,720	475,720	
50mm	473,720	572,420	

순창군 고시 제 2026 - 85호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I. 예산편성 추진경과

- 의회예산(안) 제출일 : 2026. 3. 16.
- 예산 의 결 일 : 2026. 3. 26.
- 주요 증감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제1회추경 예산액	2026년 예산액	증 감	주 요 증 감 내 역
합 계	584,492	577,674	6,818	
일반회계	566,620	559,760	6,860	○ 지방세입 ○ 세외수입 ○ 지방교부금 ○ 조정교부금 ○ 보조금 ○ 전채 ○ 세외수입 ○ 보조금 ○ 전채
특별회계	17,872	17,914	△42	○ 세외수입 ○ 보조금 ○ 전채

II. 예산규모

- 회계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제1회추경 예산액	2026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합	계	584,492	577,674	6,818	1.18
일	반 회 계	566,620	559,760	6,860	1.23
특	별 회 계	17,872	17,914	△42	△0.24
	상 수 도 사 업	8,997	8,997	0	0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487	529	△42	△8.03
	새 농 촌 육 성 기 금 운 영	7,283	7,283	0	0
	공 공 주 택	1,100	1,100	0	0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5	5	0	0

2026년 3월 30일

순 창 군 수